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제 (1호)약관 (구 서울은행)개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3조(용어의 정의)</p> <p>① (생 략) <신 설></p> <p>③ "과세제외금액"이란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세액공제 ('13.12.31이전 납입 분은 소득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p> <p>④ "연금수령"이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후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3조제5항의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제 27조 제3항에 따른 인출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처가 만55세 이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p>제8조(신탁기간)</p> <p>①(생 략)</p> <p>② 적립기간은 최소5년이상 거래처의 연령이 만55세이상 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p>	<p>제3조(용어의 정의)</p> <p>① (좌 동)</p> <p>② "<u>이연퇴직소득</u>"이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p> <p>③ "과세제외금액"이란 연금계좌 내 금액 중 <u>이연퇴직소득</u> 세액공제(2013.12.31이전 납입 분은 소득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p> <p>④ "연금수령"이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후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3조제5항의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제 27조 제3항에 따른 인출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처가 만55세 이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p>제8조(신탁기간)</p> <p>①(좌 동)</p> <p>② 적립기간은 최소5년이상 (다만, <u>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u>)으로 거래처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연</p>	<p>이하 항 체하 이연퇴직소득 용어 정의</p> <p>이연퇴직소득 문구 추가</p> <p>이연퇴직소득 문구 추가</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 연금지급기간은 제3조제3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합니다.</p> <p>제13조(연금지급) ① 제3조 제3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날 이후 거래처가 은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연금수령개시일을 사전약정 하는 경우 포함)하면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하여 지급합니다.</p> <p>②~⑤(생 략)</p> <p>⑥ 제5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p> <p>1. 2013년3월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6년차</p> <p>2.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p> <p>⑦ 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합니다.</p> <p>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p>	<p>금수령 개시 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p> <p>③ 연금지급기간은 제3조제4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합니다.</p> <p>제13조(연금지급) ① 제3조 제4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날 이후 거래처가 은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연금수령개시일을 사전약정 하는 경우 포함)하면 은행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하여 지급합니다.</p> <p>②~⑤(좌 동)</p> <p>⑥ 제5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p> <p>1. <u>20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 3. 1.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거래처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포함)의 경우: 6년차</u></p> <p>2.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p> <p>⑦ 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합니다.</p> <p>1. <u>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u></p>	<p>항 변경</p> <p>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문구 추가</p> <p>문구추가</p>

현 행	개정안	비 고
<p>2.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말합니다)</p> <p>제23조(인출순서) ①인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1.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 2.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p> <p>제27조(세제혜택등) ①)생 략)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며,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적용세율은 아래의 각호에 의합니다. 1.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2.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p>	<p>2.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p> <p>제23조(인출순서) ①인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1.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 2.이연퇴직소득 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p> <p>제27조(세제혜택등) ①)생 략)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며, 제13조 7항 2호 및 3호에 대한 적용세율은 아래의 각호에 의합니다. 1.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결) 2.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이연</p>	<p>인출순서 추가</p> <p>문구추가</p> <p>인출순서 추가</p> <p>문구 구체화</p> <p>이연퇴직소득 명확화</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36조(계좌이체) ①~③ (생 략) 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 1. '13.3.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13.3.1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로 계좌이체 되는 경우 2. 퇴직연금계좌로 계좌이체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p> <p><신 설)></p> <p>⑤(생 략) ⑥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p>	<p><u>퇴직소득세로 과세)</u></p> <p>제36조(계좌이체) ①~③ (생 략) 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 1. <u>2013.3.1</u>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u>2013.3.1</u>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로 계좌이체 되는 경우 2. <u>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u> 3.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⑤ <u>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합니다.</u> 1. <u>제3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3조 제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u> 2. <u>제3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u> ⑥(좌 동)</p>	<p>용어정비</p> <p>세법변경 반영 이하 항 체하</p>

현행	개정안	비고
<p>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체신청 및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가입자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릅니다. <p>㉗ 제6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㉗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체신청 및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가입자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따릅니다. <p>㉘ 제7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㉙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한다.</p>	<p>항 신설</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38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p> <p><신 설></p>	<p>제38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하 <u>며, 전자금융거래와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u>(시행일) 이 약관은 2016. 7. 4.부터 시행합니다.</u></p>	<p>문구추가</p>